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24
----------	-------

발의연월일 : 2026. 5. 19.

발 의 자 : 문대림 · 김한규 · 서삼석  
박지원 · 김 윤 · 정태호  
윤준병 · 전진숙 · 부승찬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기념사업 및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사업을 추진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제1차부터 제8차까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및 심사를 실시하여 1만 5천여 명의 희생자와 12만 명 이상의 유족을 결정하였고, 이들의 공동체 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는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 확

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다수의 희생자 및 유족을 대표하여 추모사업, 유족 복지사업, 평화·인권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중 희생자 및 유족을 대표하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아울러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단체의 공신력과 대표성을 보호함으로써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화해·상생·평화·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 각 호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법인 중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아닌 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제2항에 따른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과태료)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25조의2(제주4·3사건 관련 단</u>  <u>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u>  <u>방자치단체는 제24조 각 호에</u>  <u>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운영</u>  <u>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u>  <u>4·3사건 관련 단체(제주특별</u>  <u>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u>  <u>영리 법인 중 제주4·3희생자</u>  <u>유족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u>  <u>서 같다)의 운영에 필요한 보</u>  <u>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아닌</u>  <u>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또</u>  <u>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u>  <u>여서는 아니 된다.</u></p> <p><u>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u>  <u>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u>  <u>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u>  <u>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u>  <u>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u>  <u>또는 공유재산을 제2항에 따른</u>  <u>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u></p>

<신 설>

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과태료)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